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9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강구태, 김학식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14.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등기소 2020. 5. 26. 접수 제103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개명전 : G)에게 대여금을 기초로 한 판결금 채권(소제기 시점까지 원리금 합계액 약 173,505,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F은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급여 등 재산을 은닉하였고, 원고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동시 또는 별도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행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또는 전득자와 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인 F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 혹은 은닉행위¹⁾가 아닌 수익자 지위에 있는(증여가 존재함이 입증될 경우에 한함)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1) 증여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